

2017년도

가정폭력 예방교육 교육자료

2017. 11.



공공기관 가정폭력예방교육 실시 : 연 1회 1시간 이상 필수

➤ 관련근거 :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





※ 동영상 시청 방법 : “본교 홈페이지 로그인 > My Campus > 폭력 예방교육 팝업창 > 동영상보기”
또는 “학교공지사항 > 폭력 예방교육 공지사항 > 동영상보기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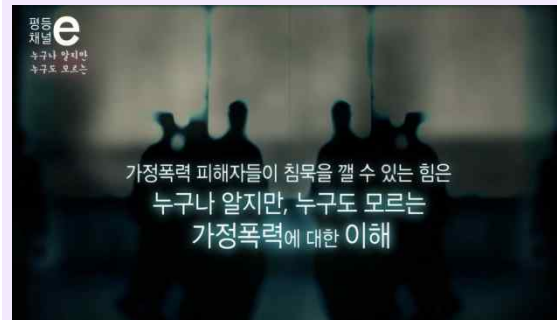
1부. 아동폭력

민감한 목격자



2부. 부부폭력

참아야 하는 폭력이 아닙니다



3부. 폭력예방

전염병을 막는 방법



1부. 아동폭력 : 민감한 목격자①



부모 손에 죽는 아이 한 달 2.6명

〈2014 한국의 존속살해와 자식살해 분석(2006년~2013년 3월 기준)〉 서울지방경찰청

학대 피해 아동의 79.8%가 친부모, 계부모, 법적 보호자에 의해 학대

〈2015 전국아동학대 현황〉 중앙 아동보호전문기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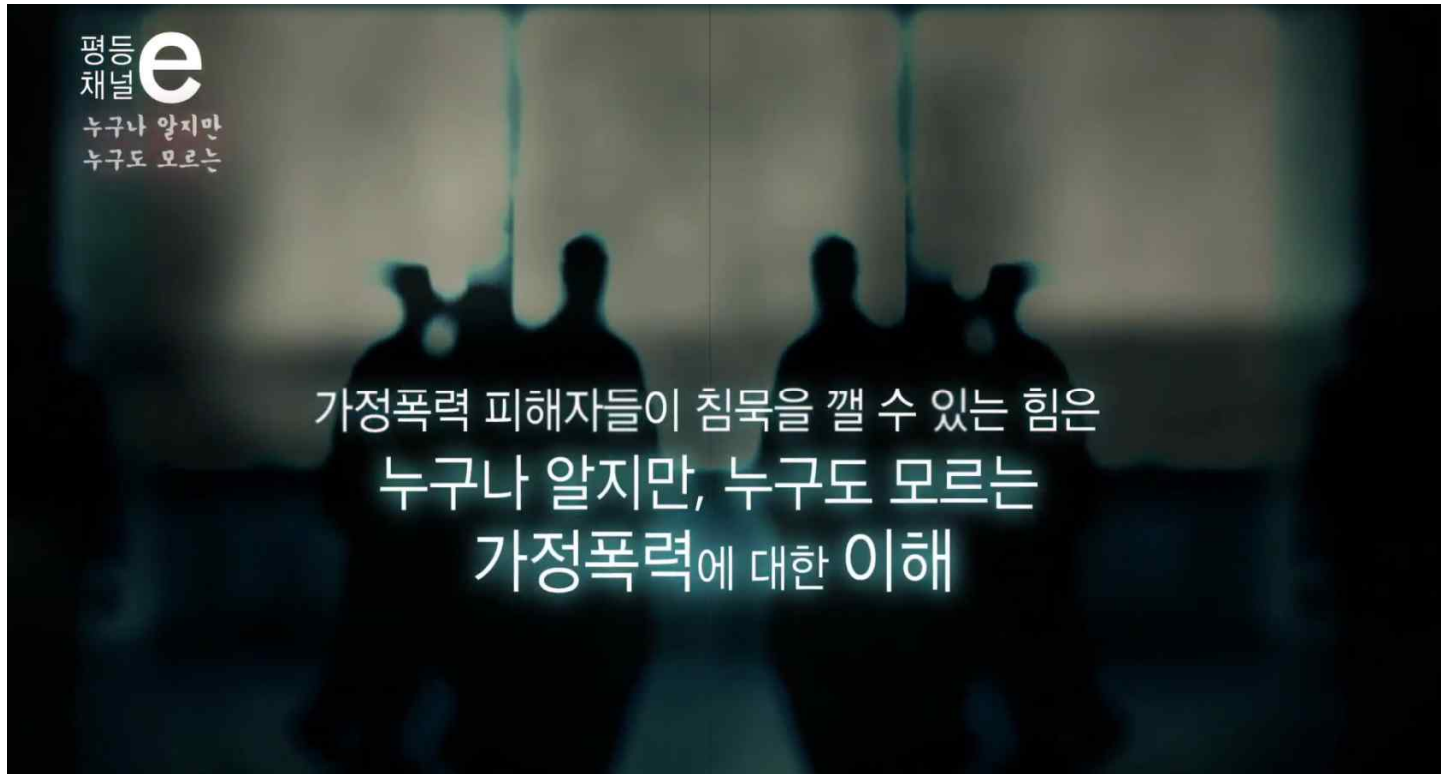
1부. 아동폭력 : 민감한 목격자②



- ✓ 아동학대 특례법은 직무상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업군을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 규정
- ✓ 유치원교사. 학교. 학원의 교사. 병원 의사. 동네 주민과 이웃. 아동복지전담공무원 모두가 ‘아동학대 신고 의무자’
- ✓ 아동학대에 대한 ‘침묵’은 아이들의 죽음에 대한 또 다른 ‘공범’

“한 아이를 살리고 키우는 의무는
이웃인 우리 모두에게 있다”

2부. 부부폭력 : 참아야 하는 폭력이 아닙니다①



폭력=범죄행위

그러나 “폭력이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면?”

2부. 부부폭력 : 참아야 하는 폭력이 아닙니다②



“학대는 오직 침묵 속에서만 자라납니다.
우리 피해자들은 여러분이 필요합니다.
여러분 모두가 가정폭력의 비밀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.
여러분도 가정폭력을 끝낼 힘을 가지고 있고
그 힘은 바로 그곳에 불빛을 비추는 것으로 비롯됩니다.”

- 레슬리 모건 스타이너

3부. 폭력예방 : 전염병을 막는 방법



“폭력은... 남의 일, 남의 집안 일이 아니다”

가정에서, 학교로, 사회로 폭력이 퍼지는 것을 막는 전염병의 연결 고리를 끊는 답은 폭력은 이웃의 책임, 사회의 책임에서부터 시작한다.



기타기관 :

아동보호전문기관(577-4396)
노인보호전문기관(577-4389)
건강가정지원센터(577-9337)
범죄피해자지원센터,
원스톱지원센터 등

여성긴급전화
1366

- 365일 24시간 위기 개입 상담 (초기지원)
- 긴급피난처 운영: 7일 이내 긴급보호
- 지역관련 기관 연계 (쉼터, 법률, 의료 등)

가정폭력피해자
지원기관

가정폭력
상담소

- 평일 9:00 ~ 18:00 정기적인 상담
- 가해자 교정 및 치료 프로그램 운영(지정기관)
- 피해자 치료 및 회복 프로그램 운영
- 가정폭력전문상담원양성교육(지정기관)
- 부부 및 집단 상담
- 지역 관련기관 연계 (쉼터, 법률, 의료 등)

가정폭력
피해자
보호시설

- 지속적인 상담, 법률, 의료지원 서비스
- 자녀와 함께 생활 (의식주 무료제공)
- 학습지원(비밀 전학 등)
- 자립 지원 (취업 연계, 직업훈련 등)

※출처: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가정폭력방지본부(2013), 2013년 양성평등인권의식 경찰직장교육 강의자료 여성가족부

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당신의 역할





가정폭력 예방은
당신의 작은
관심에서
시작됩니다!